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9. 30.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407호로 2024년 9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최근 인건비 등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구민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대행업체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여건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안정적인 정화조 청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조정(안 제7조 별표)

- 분뇨(10ℓ) 180원 → 220원
- 정화조 기본요금(0.75m<sup>3</sup>) 22,500원 → 23,800원
- 정화조 초과요금(0.1m<sup>3</sup>) 1,960원 → 2,240원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 5.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인건비 및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구민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행업체의 인건비 보전을 위해 수수료 인상을 통한 현실화로 안정적인 정화조 청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7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금액을 분뇨는 10ℓ 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정화조의 기본요금은 0.75m<sup>3</sup>당 22,500원에서 23,800원으로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0.1m<sup>3</sup>당 1,960원에서 2,240원으로 인상하였음. 아울러 정화조의 할증 요금 구간에 야간 및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음.

### ○ 검토결과

- 우리 구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sup>1)</sup> 청소 수수료를 그간 여러 차례 변경해 왔음.

---

1) 「하수도법」 제2조제13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 우리구 수수료 변동 현황

구분 \ 변동연도		'11.9.1	'17.7.1	'22.7.1	'22년 인상률
정 화 조	기본(0.75m <sup>3</sup> )	21,140원	22,300원	22,500원	200원 ↑ (0.89%)
	초과 (0.1m <sup>3</sup> )	1,490원	1,620원	1,960원	340원 ↑ (20.98%)
분뇨(10L)		140원	150원	180원	30원 ↑ (20%)

- 한편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의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운영비용 상승에 따른 청소 수수료 조정을 위한 근거조사 용역<sup>2)</sup>을 실시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황, 인력 및 장비 분석, 수집·운반 원가분석 등을 지난해 6월 통보함.
- 용역 결과를 보면 정화조 기본 금액을 22,500원에서 30,100원으로 7,600원으로 33.8%를 인상하고 초과 금액을 1,960원에서 2,620원으로 33.7%를 인상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음. 또한 분뇨도 180원에서 260원으로 44.4% 인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 서울시 용역('23.6월) 대비 우리구 수수료 현황

구분		현재	용역결과 (조정안)	금액차이 및 비율
정 화 조	기본(0.75 m <sup>3</sup> )	22,500원	30,100원	7,600원 (33.8% 인상 필요)
	초과(0.1 m <sup>3</sup> )	1,960원	2,620원	660원 (33.7% 인상 필요)
분뇨(10 L)		180원	260원	80원 (44.4% 인상 필요)

2)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반영한 총괄원가를 산출하고 연간 수거량에 따른 톤당 원가를 산출

- 최근 5년간의 통계청 자료 현황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대비 꾸준히 상승해 왔고, 최저임금과 노임단가(일)도 같은 추세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유 가격은 상황에 따라 변동 내역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 □ 최근 5년 각종 통계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100.00	102.50	107.72	111.59	114.54
최저임금(원)	8,590	8,720	9,160	9,620	9,860
노임단가(원)	138,290	141,096	148,510	157,068	165,545
경유가격(원)	1,189	1,391	1,842	1,558	1,501

-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 물가의 상승으로 대행업체의 청소 인력 충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기술한 통계와 같이 해당 비용의 상승이 예측되므로 합리적 경영 유지가 어려움이 예상됨. 서울시 물재생센터가 있는 중랑물재생센터(성동구), 탄천물재생센터(강남구), 서남물재생센터(강서구)는 타구에 비해 수수료가 낮은 편으로 높아지는 유류비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우리구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월 평균 급여(세후)가 약 450만원인 반면 분뇨처리 수집·운반 종사자는 약 390만원으로 동일가치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86% 수준 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임.

- 우리구 정화조 현황을 보면 50인조 미만 정화조가 전체 정화조 시설 22,715개소 중 16,896개소로 전체 정화조 시설에서 7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기본요금의 전체 비중이 높은 50인조 이하 서민의 인상폭을 최소화(5.8%)하였고, 정부 노임단가 상승분을 적용한 금액으로 2024년 요금을 인상한 타 자치구의 초과요금 평균금액(2,240원)과도 일치하여 정화조 요금의 인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분뇨 요금은 임시화장실 수거용이 대부분으로 인상률은 22.4%로 높으나 연간 수거량이 전체 정화조의 0.5%(1,065톤)로 서민 부담경감 요금과는 거리가 있어 현실적인 인상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건물주 요청으로 공휴일(일요일 및 국경일)에 청소할 경우 공휴일 할증요금(7%)를 징수하고 있으나 토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제외되어 있음. 토요일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원활한 작업을 시행하고 건물주의 편의를 돕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수수료 인상 시 주민부담 금액

세대별 부담 증가액: **연간 1,300원~ 2,400원**

주거형태	인조수 (청소량)	현행 청소비	인상후 청소비	세대당 연간 부담증가액
단독주택	5인조(0.75톤)	22,500원	23,800원	1,300원
다가구(2세대)	10인조(2톤)	47,000원	51,800원	2,400원
다세대(4세대)	20인조(3톤)	66,600원	74,200원	1,900원
연립(10세대)	50인조(6톤)	125,400원	141,400원	1,600원

- 서울시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총원가의 73%에 불과한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인건비 및 소비자 물가 상승을 토대로 한 제반 경비를 반영하여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되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한 구민 부담의 최소화가 그 목적으로 금번 수수료 변동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정화조 현황**

(단위: 개소(비율))

용량(인용) 합계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 이상
22,715 (100%)	16,896 (74%)	2,501 (11%)	1,354 (6%)	973 (4%)	418 (2%)	573 (3%)

※ 소규모 50인조 미만 정화조가 전체 정화조시설 중 74% 차지

**대행업체 현황**

업체명	청소차	인력	대행구역	비고
서울산업(주)	14대	28명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동, 대림동	수거식 분뇨 (전지역)
덕성개발(주)	8대	19명	여의도동, 신길동	

**인력 및 장비현황**

업체명	인력				장비				
	계	운전원	미화원	사무원	계	3톤 이하	5톤 이하	10톤 이하	10톤 초과
합 계	47	18	16	13	22	3	6	2	11
서울산업(주)	28	11	10	7	14	2	4	1	7
덕성개발(주)	19	7	6	6	8	1	2	1	4

**정화조 청소 실적: 2023년**

업체명	청소건수	수거량	청소금액
합 계	20,211건 (1일 약70건)	241,342톤 (1일 약804톤)	5,034백만원
서울산업(주)	13,739건	146,014톤	3,092백만원
덕성개발(주)	6,472건	95,328톤	1,942백만원

※ 수거식 수거량: 286건, 1,065톤, 19백만원(전체량의 0.5%)



□ 자치구별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황

연번	구 별	청 소 업체수	요금 인상일	종전 인상일	정화조	
					기본 (0.75m <sup>3</sup> )	초과 (0.1m <sup>3</sup> /당)
1	노원구	2	2024.08.01	2017.12.28	26,300	2,590
2	동대문구	2	2023.11.01	2019.06.01	24,500	2,350
3	구로구	2	2024.07.01	2018.09.01	24,000	2,300
4	강북구	2	2017.09.01	2007.05.01	23,430	2,220
5	종로구	2	2024.01.01	2013.01.01	22,500	2,200
6	중 구	2	2020.07.20	2011.07.01	22,500	2,200
7	성북구	2	2018.01.01	2007.12.01	22,500	2,150
8	관악구	2	2018.01.01	2009.03.01	22,500	2,120
9	도봉구	2	2017.03.30	2007.05.01	22,500	2,116
10	서대문구	2	2023.07.01	2009.12.31	22,500	2,090
11	중랑구	3	2021.07.01	2009.12.29	22,500	2,070
12	용산구	2	2020.12.31	2015.04.13	22,500	1,990
13	동작구	2	2019.01.01	2010.01.01	22,500	1,972
14	영등포구	2	2022.07.01	2017.07.01	22,500	1,960
15	강동구	2	2018.01.01	2008.07.01	22,500	1,960
16	은평구	3	2020.03.01	2008.11.01	22,500	1,900
17	금천구	2	2019.03.01	2009.09.01	22,500	1,892
18	양천구	3	2023.12.14	2012.01.01	22,500	1,890
19	성동구	2	2024.02.01	2019.05.09	22,500	1,880
20	송파구	2	2018.07.29	2009.07.17	22,500	1,830
21	마포구	3	2021.01.01	2013.03.01	22,500	1,800
22	광진구	2	2019.01.01	2011.12.01	22,500	1,790
23	서초구	3	2017.07.01	2009.11.02	22,500	1,700
24	강남구	2	2017.06.01	2009.04.01	22,500	1,608
25	강서구	2	2016.01.01	2010.07.01	21,580	1,550

# 참고 자료

## 1 하수도법

-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20. 5. 26.>
-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